

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8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2년 1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 제안이유

지방세법의 개정(2001. 12. 29, 법률 제6549호)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세조례중 건설업자 면허등록시 등록세 납부규정과 공동시설세의 납기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 주요골자

가. 건설업자 면허등록시 등록세 납부규정 삭제

· 건설업에 관하여 건설업자면허대장에 신규등록시 매 1건당 115천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

⇒ 지방세법에서 납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

나.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 조정

· 재산세의 납기가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와 병기하여 부과되는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함 (제60조)

- 과세기준일 : 매년 5월 1일 ⇒ 매년 6월 1일

- 납 기 : 매년 6월 16일 ~ 6월 30일

⇒ 매년 7월 16일 ~ 7월 31일

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를 삭제한다.

제48조제1항 및 제3항중 “제46조”를 각각 “제44조”로 한다.

제60조제1호중 “매년 5월 1일”을 “매년 6월 1일”로 하고, 동조제2호중 “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”를 “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60조(과세기준일 및 납기)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과세기준일 : 매년 5월 1일</p> <p>2. 납기 :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</p>	<p>제60조(과세기준일 및 납기)</p> <p>1. ----- : 매년 6월 1일</p> <p>2. --- :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</p>

관계법령 발췌

○ 지방세법

제3조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)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, 과세객체, 과세표준, 세율 기타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.

제242조(재산세 등의 준용) ①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중 제183조, 제184조, 제189조 및 제191조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.

○ 개정 지방세법 (법률 제6549호, 2001. 12. 29 공포)

제149조(건설업자 면허등록의 세율)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하여 건설업자 면허대장에 신규등록을 받을 때에는 매 1건당 115,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 ⇨ 삭 제

제189조(과세기준일 및 납기)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,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. ⇨ 개 정